

대법원 2020도10180 저작권법위반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 공보연구관실(02-3480-1895)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저작자인 피해자가 작성하여 올린 SNS(페이스북) 게시물 등을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 채 마치 자신의 저작물인 것처럼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판에 게시하면서 임의로 내용을 더하거나 구성을 변경하여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인격권인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위험이 있는 상태를 야기함으로써 저작자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있다' 고 판단하여, 같은 취지에서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벌금 1,000만 원)을 수긍하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음(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0도10180 판결)

1. 사안의 개요

- 저작자인 피해자(기계항공공학 박사, 기술연구소 소장)는 그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주제에 관하여 다수의 페이스북 게시글·저널 연재글을 창작하여 게시·연재함
- 피고인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47회에 걸쳐 무단으로 피고인의 페이스북 게시판에 피해자의 페이스북 게시글 및 저널 연재글(이하 '피해자 저작물')을 저작자인 피해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 채 마치 자신의 저작물인 것처럼 게시하거나 임의로 내용을 더하거나 구성을 변경하여 게시함
- 이에 피고인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음
 - ① 피해자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 및 공중송신하여 복제권 및 공중

송신권 침해(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 ② 저작자 허위표시 공표(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 ③ 저작인격권 침해(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

2. 소송의 경과

- ▣ 1심: 유죄(벌금 700만 원), 일부 이유 무죄(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위반 부분)
 - [①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 ② 저작자 허위표시 공표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 유죄
 - [③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위반] 이유 무죄: 피고인의 행위가 저작인격권 침해를 넘어서 저작자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 원심: 제1심판결 파기, 전부 유죄(벌금 1,000만 원)
 - [③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위반] 유죄: 피고인의 저작인격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저작자인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인정됨

3. 대법원의 판단

가. 쟁점

- ▣ 타인의 페이스북 및 저널 연재 게시물을 일부 변경하여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판에 자신의 글인 것처럼 무단으로 게시한 행위가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판결 결과

- ▣ 상고기각

다. 판단 근거

- ▣ 관련 법리

-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는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과 함께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여기서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란 저작자 또는 실연자가 그 품성·덕행·명성·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 평가, 즉 사회적 명예를 가리킴.** 본죄는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통해서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고,** 현실적인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다만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위험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음.**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지는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주관적 감정이나 기분 등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행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침해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침해행위의 내용과 방식, 침해의 정도,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저작물 또는 실연과 관련된 활동 내역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사회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행위인지를 기준으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함**

■ 이 사건에 대한 판단

- 저작자인 피해자는 전문지식 등을 바탕으로 페이스북이나 저널의 전문가 연재란에 다수의 글을 게재하면서 자신의 학식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평판을 누리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페이스북 계정을 닫는 등 피해자 저작물의 게시를 중단하자 피고인이 이러한 기회에 피해자 저작물을 이용하여 자신도 다양한 주제에 대한 상당한 식견이 있는 사람처럼 행세하고자 위와 같은 저작인격권 침해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이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여 페이스북에 게시한 피해자 저작물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마치 피고인의 저작물처럼 인식될 수 있어, 피해자로서는 피해자 저작물의 진정한 저작자가 맞는지 나아가 기존에 피해자가 피해자 저작물의 창작 등을 통해 얻은 사회적 평판이 과연 정당하게 형성된 것인지 의심의 대상이 될 위험이 있게 됨
- 피고인이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여 페이스북에 게시한 피해자 저작물로 인하여, 그 저작자를 피해자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피고인의 게시글에 나타난 피고인의 주관이나 오류가 원래부터 피해자 저작물에 존재했던 것으로 오해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저작자인 피해자의 전문성이나 식견 등에 대한 신망이 저하될 위험도 없지 아니함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인격권인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위험이 있는 상태를 야기함으로써 저작자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있음

4. 판결의 의의

- ▣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죄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판단한 사례가 없었음
- ▣ 이 판결은,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죄가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과 함께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사회적 명예를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음을 전제로,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인해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고,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할 위험이 있는지는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한 첫 대법원 판결임